군보

홍성군
HONGSEONG-GUN

군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808호 ◆ 2022. 11. 3.(목)
발 행: 홍성군
편 집: 홍보전산담당관(041)630-1223

입법예고

○ 제2022-1772호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

회람								

홍성군 공고 제2022-1772호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일

홍 성 군 수

1. 조례명 :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정책 및 민선 8기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 설치와 인력증원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가. 민선8기 역점사업 및 미래혁신 전략사업 발굴·추진을 위한 기구 설치

- 과(課) 신설 : 보좌기관으로 혁신전략담당관 설치

나. 농업기술센터 하부조직 지소를 팀제로 운영함에 따른 지소 문구 삭제

다. 조직개편 및 국가정책, 지역현안 반영에 따른 기준정원 조정 : 3명

○ 정원의 총수

(단위:명)

구 분	현 행	개 정	증 감
총계	932명	**935명**	+3
집행기관의 정원	914명	**917명**	+3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8명	**18명**	-

○ 직급별 정원의 총수

(단위:명)

구분	총계	정무	일반직						연구	지도
			소계	3급	4급	5급	6급 이하	전문 경력관		
현행	932	1	891	1	5	41	841	3	4	36
조정	**935**	**1**	**893**	**1**	**5**	**42**	**843**	**2**	**4**	**37**
증감	**+3**		**+2**			**+1**	**+2**	**-1**		**+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단체는 2022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성군수(행정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문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홍성군청 홈페이지 행정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및 문의부서 : 행정지원과 인사팀

우편번호 : 32228,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전화 : 041)630-1575, 팩스: 041)630-1698, E-mail: human0704@korea.kr

붙임 1.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홍성군 조례 제 호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홍보전산담당관”을 “혁신전략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정책개발”을 “구상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혁신전략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미래전략, 정책개발,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
2.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원도심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농정발전 기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전략사업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 중 “「지역보건법」 제10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의 제목 “(소장)”을 “(소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둔다.

② 농업기술센터에 기획운영과, 친환경기술과를 둔다.

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고, 기획운영과장·친환경기술과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 내의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치유농업육성

8. 친환경농업지원, 특화작목개발 업무

제20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932명”을 “93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914명”을 “917명”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혁신전략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혁신전략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5]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24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935	-				
정무직계	1	1	-	-	-	-
군 수	1	1	-	-	-	-
일반직계	893	-				
3급	1	1	-	-	-	-
4급	5	3	1	1	-	-
5급	42	22	2	3	4	11
6급이하 소계	843	-				
전문경력관 소계	2	-				
연구직계	4	-				
연구관	-	-	-	-	-	-
연구사	4	-				
지도직계	37	-				
지도관	3		-	3	-	-
지도사	34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보좌기관) ① 부군수 밑에 기획감사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을 둔다.	제3조(보좌기관) ① ---------- ---------- 혁신전략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② 기획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 ----------.
1. 군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정책개발, 성과관리, 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	1. ---------- 구상사업----------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농정발전 기획에 관한 사항	<삭 제>
5. (생 략)	4. (현행 제5호와 같음)
<신 설>	③ 혁신전략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미래전략, 정책개발,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
	2.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원도심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농정발전 기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전략사업에 관한 사항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7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	제7조(설치) ① ---------- ---------- 「지역보건법」 제1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군에는 보건소를 군청 소재지 이외의 읍·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 ----------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설치) ①·② (생 략)	제10조(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농업기술센터에 과와 읍·면의 농업인 상담 및 기술 지도를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과와 그 하부조직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과 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11조(소장)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 내의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소장 등) ①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둔다.
<신 설>	② 농업기술센터에 기획운영과, 친환경기술과를 둔다.
<신 설>	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고, 기획운영과장·친환경기술과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 내의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소관 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12조(소관 사무)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치유농업육성
<신 설>	8. 친환경농업지원, 특화작목개발 업무
7. (생 략)	9. (현행 제7호와 같음)
제20조(소장) ① (생 략)	제20조(소장) (현행 제1항과 같음)
제22조(정원의 총수) 홍성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932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2조(정원의 총수) ---------- 935명-------.
1. 집행기관의 정원: 914명	1. ---------- 917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